

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(제8조 관련)

구분	기준
1.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
2.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영농기록의 작성·보관	영농기록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
3. 영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	<p>가. 다음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·생활폐기물의 공동 수거·처리 2) 마을공동공간의 청소·정비 및 경관개선 3)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4)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) 그 밖에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<p>나. 가목에 따른 활동의 시간·방법 및 지역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4. 영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·판매단계의 유해물질(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)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	<p>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. 농산물의 생산단계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</p> <p>나. 농산물의 유통·판매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</p>